





2020





부처형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2020. 4 이 대기가 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목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안내			
1. 국토교통부	15		
2. 산림청	18		
3. 통일부	22		
4. 문화재청	25		
5. 농림축산식품부	28		
6. 보건복지부	31		
7. 여성가족부	34		
8. 환경부	37		
9. 문화체육관광부	40		
10. 고용노동부	4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관련 상담 안내	46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

- 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
- ② 소관부처 사업분야와 관련 있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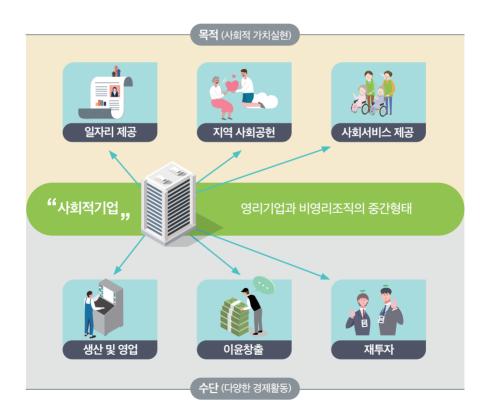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의 목적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사회적 기업의 수단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조)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방법

각 부처별 공고시기에 따라 신청기간과 일정이 상이하며, 아래의 기간에 맞춰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가능

2020년도 신청 및 심사일정



- ▶ 공고: 2.10.
- ▶ **심사일정** : 연 3회
- ▶ **심사**: 5월, 8월, 12월



- ▶ 공고 : 4월
- ▶ **심사일정** : 연 1회
- ▶ 심사 : 6월



- ▶공고:6~7월
- ▶심사일정 : 연 1회
- ▶ 심사: 9월



- ▶ 공고: 9월
- ▶ **심사일정** : 연 1회
- ▶ 심사 : 12월



- ▶ 공고 : 4월
- ▶ 심사일정 : 연 1회 ▶ 심사 : 6월



- ▶ 공고: 2.11 / 5.11 / 9.7
- ▶ 심사일정 : 연 3회
- ▶ 심사: 4월, 7월, 11월



- ▶ 공고: 4월, 7월
- ▶ 심사일정 : 연 2회
- ▶ 심사: 7월, 9월



- ▶ 공고 : 하반기
- ▶ 심사일정 : 연 1~2회
- ▶ 심사 : 하반기



- ▶공고: 4~5월
- ▶ 심사일정 : 연 2회
- ▶ 심사 : 7월중, 11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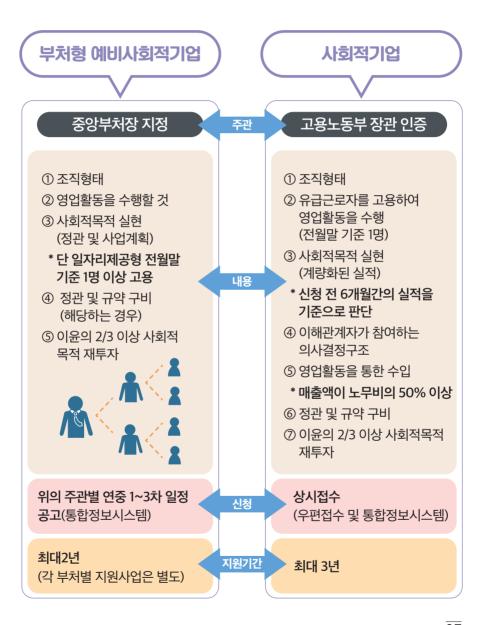


- ▶ 공고: 9~10월
- ▶심사일정 : 연 1회
- ▶ 심사: 11월
- ⊙ 각 부처별 공고는 해당 부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가능
- ⊙ 신청 및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조)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개인사업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불가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갓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예비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정관에 규정 한 후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20%이상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 지역 거주 취약계층 고용비율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이상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

지역의 빈곤 · 소외 ·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경우



4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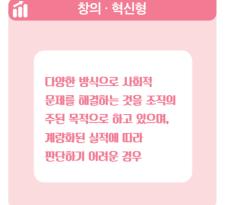
사회문제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40%이상

사회적 목적인 조직에 대하여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함 (단 일자리제공형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고용)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법인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단위: 개소,'19.12월)

부처명	활동기업 ('19.12)	신규지정 ('19)	분야
국토교통부	102	60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임대 · 관리업, 주거취약계층
산림청	117	57	임산물, 목공, 산림복지서비스 등 사람과 숲의 상생공존
통일부	8	4	의류 제조, 예술 공연 등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문화재청	10	7	문화유산 체험 등 문화재 활용,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농림축산식품부	38	36	농촌 체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농가소득과 농촌 복지증진
보건복지부	54	40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노인·장애인 지원 사업 및 보건산업 관련 기업 등
여성가족부	47	24	경력단절여성 고용,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등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사업
환경부	28	12	재활용, 기후서비스, 환경교육, 생태복원 등 지속가능한환경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56	56	문화예술 · 스포츠 · 관광 활성화
고용노동부	524	199	참여 자격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평가결과 : 성공
9개 부처	984	495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안내 ---

66 같이 할수록 기업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취약계층과 함께 동행하는 일은 사회 온도를 올리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기업과 시민들의 동행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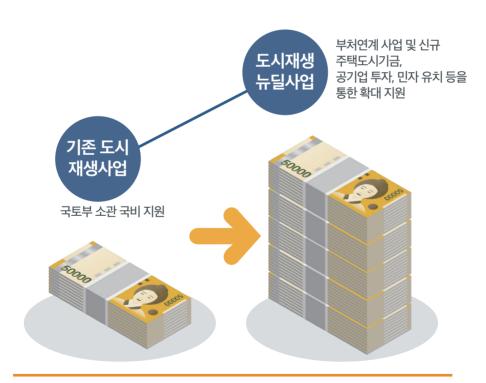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한국토지주택공사 044-201-4917~8 042-866-8328

도시재생 뉴딜사업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처 연계사업 예산과 함께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민자유치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



신청분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새뜰마을사업과 관련된 분야 (달동네 등 거주취약지역 재생)



주택임대 · 관리업과 관련된 분야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시된 분야 외 기타 도시재생 뉴딜 관련 사업

지원사항

-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 (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등 부여
-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 부여 및 한도상향 (사업비의 70% → 80%)
 -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
- ③ (사업참여 지원) 뉴딜 신규사업 선정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참여 등 내용을 평가에 반영
- ※ 세부 추진내용은 변경 가능('20년도 모집공고문 참조)





공고 시기 연중 3회

•접수: (1차) 2월, (2차) 5월, (3차) 9월



지정 시기 4월, 7월, 11월



산림일자리창업분야 전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 전반

- 산림사업, 목재산업, 정원산업, 산림보호, 산촌마을사업,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등
- * 기업의 주된 사업 및 사회적 목적이 산림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경우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정

신청분야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사업

산림 청년 분야 소셜챌린저 교육,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등을 통한사회적경제기업가 발굴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사업

산림형 중간지원조직 및 그루매니저를 통한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산림비즈니스 창업 활동 지원



→ 산림복지전문업 컨설팅

산림복지전문업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우수기업 대상 포상, 표창, 기관 홍보·마케팅 지원



→ 산촌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산촌마을 융·복합 산업화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 육성 지원

지원사항





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자원 활용 컨설팅·교육, 판로 · 미케팅, 기업홍보(박람회 등) 지원
- 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② 녹색자금 공모사업 참가 자격 부여

- 사회적가치 증진 및 산촌특화·지역상생 분야의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체험·교육사업



③기타지원

-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 서비스 우선 구매 독려





공고 시기 연중 2회

•접수 : (1차) 4월, (2차) 7월



지정 시기 7월, 9월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02-2100-2380 02-3215-5776



정책지원분야

기업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업을 영위

신청분야



→ 초기정착 생활안정지원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하고, 의료지원, 생활안내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



→ 취업·창업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활사업단 · 자활사업장 운영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햇빛플러스 매칭 적금 등을 통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업을 영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

지원사항

- → 경영 지원(마케팅, 판로개척, 세무·회계)
- →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 구매 독려
- → 남북하나재단 재정지원 사업 참가자격 부여(연내별도 공고)



04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분야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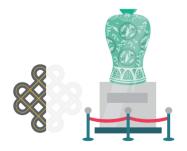
전통 문화재 활용 보존 사업

* 문화유산 체험 등 문화재 활용,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문화유산 교육 및 콘텐츠 보급 사업

-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
- *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지정

신청분야



→ 문화유산 보존 · 관리



→ 문화재 지정 ·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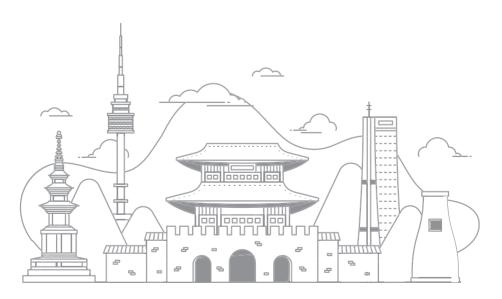


→ 문화재 보전 · 전승 촉진

→ 지역문화유산 교육 및 콘텐츠 보급

지원사항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협력 지원













농링축산식풍 분야 전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 설립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기업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신청분야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대한 사항



- → 농업 ·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사업
 -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개소당 최대 70만원 지원 / 자부담 30% 매칭 조건)









보건복지 분야 전반

*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노인·장애인 사업 제공기업(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고령자친화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보건산업 운영 기업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신청분야

→ 보건복지 분야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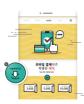


자활기업



노인 · 장애인 사업 제공 기업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고령자 친화사업,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보건산업 운영 기업

지원사항

-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한 컨설팅, 정부재정일자리 우선배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부여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에서 컨설팅 제공
 - * 시·도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 및 지원기관
- → (보건산업 분야 기업)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등 전반적인 인큐베이팅 지원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건 관련 수출 · 해외진출 등

지정 신청 관련 안내

→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 조직형태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사회적목적 창의·혁신형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기타 ③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여성인력개발분야 전반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 및 기업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양성평등 확산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신청분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및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사항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운영 (기업 기초진단, 인증전환 컨설팅, 홍보 지원, 우수기업 선정 등)









소관 사업

환경분야 전반

* 환경보건, 친환경 보존, 생활환경, 상·하수도,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기후대기 배출권, 환경기술 관련 사업 등

신청분야

→ 환경관련 분야



재활용



환경교육



생태복원



주거환경



친환경상품



청소

지원사항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경영컨설팅 및 교육, 통합워크숍 등)

지정 신청 관련 안내

- → 우선순위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 → 지정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09 문화제육관광부







소관 사업

미래문화전략분야 전반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박물관, 미술관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 및 복합화



문화 프로그램제공 등을 통한 유휴공간 문화 재생



예술 창작가의 **권리 보장 및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국내 관광 활성화,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신청분야

→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



지원사항

- → •기업 성장단계별맞춤 지원 •노무,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홍보 지원 ●공공 기관 연계 교육









소관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의·혁신)분야 전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육성사업'창업팀 중 최종 평가 결과 성공팀(양호 이상) 중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적합한 분야

신청분야

→ 기타(창의·혁신)형만 신청가능



-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 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등 타 유형을 선택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싶을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타 부처 소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 권장

66 기업과 사회의 도약, 사회적기업 99



기업에게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에는 건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시작은 국가의 성장이자 국민의 행복입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관련 상담 안내

신청접수 : www.seis.or.kr

각부처 담당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업무담당 031-697-7723 : 지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11-1	7158	7-2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 6층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동산동 11-4번지)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이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서울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naver.com	
경기	070-4763-0130	070-4763-0120	pns@pns.or.kr	
인천	032-446-9492	032-421-9585	hongikse@daum.net	
강원	033-749-3905	033-749-3900	gwcs0524@naver.com	
대구	053-956-5001	053-217-5003	ucsr@hanmail.net	
경북	053-956-5002	053-267-5003	se@sebiz.or.kr	
부산	051-517-0266	050-4926-0028	info@rise.or.kr	
울산	052-267-6176	052-267-6177	ulsan@sescoop.or.kr	
경남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naver.com	
광주	062-383-1136	062-384-1137	ses@socialcenter.kr	
전북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gmail.com	
전남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naver.com	
제주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hanmail.net	
대전 세종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hanmail.net	
충북	043-222-9001	043-223-9201	cbse@hanmail.net	
충남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gmail.com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인건비	전문 인력 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차년도 10% → 2차년도 20% - 인증사회적기업: 1차년도 20% → 2차년도 30% → 3차년도 50%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О	· · · · · · · · · · · · · · · · · · ·	
	(예비)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도 이전 인·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19년도 이후 인·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50% 사회적기업: 1~3년차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0	0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상세내용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자부담율: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0	0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시전세포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3~10백만원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기초만 가능)	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	0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0	
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0	0	

2020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안내

발행일 2020년 4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전 화 044-202-7427

디자인 열림기획(주) 044-868-5055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